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□ 인도네시아 식품 라벨링 제도 개정

- 가공 식품 라벨링에 대한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(BPOM) 규정 2017년 27호의 개정안 2018년 31호 발표(10월 19일 시행)
- 라벨링 규정은 1999년 법령을 근거로 수차례 개정 발표가 되고 있으며, 2018년 개정 내용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
- 가공식품 제조 과정 중에 돼지 파생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 설비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촉한 경우 빨간 글씨와 테이블로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함

**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
dan/atau menggunakan fasilitas bersama
dengan bahan bersumber babi**



▲ 해석 : 제조 과정 중 돼지 파생 원료와 함께 제조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거나 접촉하였음(41조 참고)

- 수입 식품 포장에 최소한 의무 표기 사항
 - a. 제품명
 - b. 재료 성분 표시(전성분)
 - c. 중량 및 수량
 - d. 제조사와 수입사의 명칭과 주소
 - e. 할랄 정보(할랄 제품일 경우)
 - f. 제조일련번호 및 제조일
 - g. 유통기한
 - h. 수입식품등록번호
 - i. 특정 식품재료에 대한 원재료 출처(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기준)

- 라벨링의 표기는 인도네시아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
- 라벨링의 표기는 최소 1mm 이상으로 Arial 폰트 6이상 이어야 함
- 제품의 명칭 표기 사항으로 일반 가공 식품은 제품의 유형(종류)를 우선 기재하고 브랜드를 표기 할 수 있음. 제품명은 제품의 유형에 병행 표기 할 수 있음
- SNI 의무 인증 대상 제품은 SNI 인증을 받은 명칭과 동일하여야 함
- 일반 가공 식품은 특정 영양 성분 및 효능에 대한 표기를 할 수 없음. 단 “Dari(로부터)-재료명, Dengan(함께)-재료명 또는 재료 이미지로 표기 할 수 있음
- 첨가물인 가당류 사용 시 주의 사항(연령, 임산부 등)에 대하여 의무 표기되어야 하며, 색소 첨가물 사용 시 “Pewarna Pangan(식품 색소)”라는 초록색 테이블이 표기되어야 함
- 일반 가공 식품 표기에 無색소, 無가당, 無첨가물, 無방부제, 無감미료 표기만 심사 허가 후 사용 가능

* 출처 : BPOM 2018, 31호

1. 식품의약품(BPOM) 수입 신고 SKI(Surat Keterangan Impor) 허가 준비 서류
 - 인도네시아로 수입 되는 모든 식품 및 식품 첨가물, 원재료는 수입 통관 전에 SKI라는 수입 신고서를 식품의약품(BPOM)에서 발급 받아야만 인니 세관의 화물 통관이 가능함
 - SKI 신청은 웹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(<https://e-bpom.pom.go.id/>)하며, 처리 기간은 접수 후 최소 8시간 경과 이후부터 최대 3 근무일임
 - 신청 준비 서류
 - 선화 증권 B/L 또는 AirWaybill 사본
 - INVOICE , PACKING LIST 사본
 - 분석증명서(COA), 위생증명서(Health cetificate), CFS(자유판매 증명서) 사본
 - SKI 신청서 및 사용 용도(유통 관리) 준수 서약서
 - SKI 신청 시 분석증명서상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하며, 누락 시 서류 하자로 반력 처리 됨
 - 제품명, Batch (lot) No, 제조일, 유효 기간, 시험 항목에 대한 항목별 시험 검사 방법
 - 인보이스 상의 제품 명칭과 분석증명서 그리고 기타 제반 서류상에 명칭이 모두 일치하도록 주의 필요
 - SKI는 처리 시간이 빠르고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상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관련 필요 서류 준비 미흡과 서류상 기재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으로 반력 처리 사례가 많은 편임
 - SKI는 승인이 되면 BPOM에 제출한 서류들이 전산으로 등록 되며 이 전산 자료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도 열람 확인하기 때문에 통관 제출 서류와 차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
- * 출처 : BPOM 2017, 30호 / BPOM 2018, 26호

2.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및 실험실 등록

-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을 받아야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가능
 - ①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
 - ②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
- 수출국가가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에 대해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을 받았을 경우 수출업체는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수출하면 됨
 - ①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
 - 사전신고서만 제출
 - ② 식품안전성 검사실험실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
 - 사전신고서 / 분석증명서(COA)을 발급받아 제출
- 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의 신선농산물 수출 절차
 - *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이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안전성검사 실험실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갱신중에 있음

○ 분석 신청(수출업체) 및 시료 수거(농관원 지원·사무소)
- 농관원 관할 지원(사무소)에 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
- 안전성 담당자가 신청 시료를 수거하여 지원 분석실로 송부



○ 분석결과 통보(농관원 지원)
- (수출 적합) 지원 품질관리과에서 분석증명서 발급
- (수출 부적합)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

↓(수출 적합인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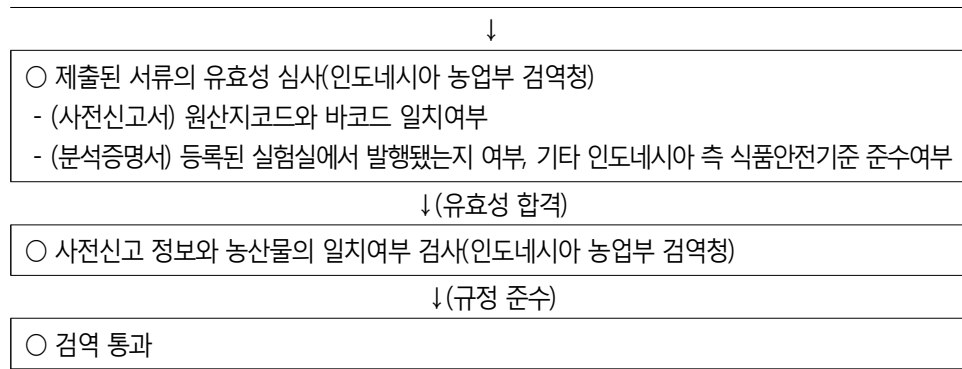
○ 사전신고(수출업체)
-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(IAQA)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
(<http://www.karantina.deptan.go.id/> 혹은 <https://notice.karantina.pertanian.go.id/>)
* 인도네시아 도착 전 경유를 하는 경우, 경유를 위한 사전신고서 함께 신청



○ 사전신고서 발급(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)



○ 사전신고서(경유지 사전신고서 포함)와 분석증명서 제출하고 수출



* 출처 :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령 2015년 제 4호